##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668

발의연월일: 2024. 10. 11.

발 의 자:박 정·어기구·이학영

박홍배 • 김주영 • 김현정

김태선 · 김정호 · 안호영

이기헌 · 소병훈 · 윤후덕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금제도, 퇴직연금 제도,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2022년 기준 30인 미만 대상 중 도입사업장은 23.7%, 가입 근로자는 33.6%에 불과한 실정이고,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76.2%인데, 근로자 가입률은 59.1%에 불과해 대상 사업장을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입 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 현재 단기고용 등 1년 미만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

는 상황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적용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재 국가통계에선 기업규모 기준으로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등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30인 이하로 되어 있어 관련 통계자료의 활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기업을 상시 10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일수에 비례해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해 상대적 노동취약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제12조제4항 및 제15조 단서 신설).

#### 법률 제 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4호 중 "30명 이하"를 "100명 미만"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14
도"란 중소기업(상시 <u>30명</u>	<u>100명</u>
<u>이하</u>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미만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	
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	
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	
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	
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	
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	
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	
다.	
15. • 16. (생 략)	15. • 16. (현행과 같음)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	<b>4</b>
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	

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지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u>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u>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	15조(급여수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
	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